

부록

## 『무용역사기록학』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간행 규정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원고작성 요령



## ■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용역사기록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개정 2019.12.12.]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부편집위원장 2인 내외
3. 편집위원 20인 이내(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 포함)
4. 편집간사 2인 내외

### 제3조 (선임 및 임기) [개정 2019.12.12.]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부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학덕을 겸비한 국내의 학자로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은 전체 편집위원의 1/2 이상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임원 임기에 따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자격)

1.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등재학회지(KCI급)에 2편 이상, 최근 5년간 학술서적(번역 포함) 1편 이상을 발표한 자로 한다.

### 제5조 (업무) [개정 2019.12.1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무용역사기록학』의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2. 학계 동향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집 연구주제를 선정하며, 연 1회는 본 학회의 학술행사 주제와 연동하여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이하 ‘편집국’)은 원고 수집에서부터 심사 및 교정에 이르기까지 학회지 발간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운영)** [개정 2019.12.12.]

1. 이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결과 보고)**

이 위원회는 연간 사업 활동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절차)** [개정 2017.6.10.] [개정 2019.12.12.]

1. 편집국은 『무용역사기록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2.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서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3. 편집국은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를 종합판정표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4. 편집국은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편집국은 투고 승인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판정 소견을 검토한 후 수정 요구 사항이 포함된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투고자는 소정 기일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고 수정 사항을 이행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야 하며, 편집국은 재심사 결과의 판정 소견을 근거로 최종 게재 결정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은 『무용역사기록학』 심사규정에 준한다.

**제10조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 [개정 2019.12.12.]

1. 3인 심사위원의 심사 판정의 소견이 각각 다르게 나누어질 경우, 본 학회 간행 규정과 심사규정에 제시된 종합판정표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2. 편집국의 수정 요구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제11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재시행)

이 규정은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의 통합 이전인 200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논문투고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무용역사기록학회로 통합한 이후인 2014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개정) [개정 2017.6.10.]

이 규정의 제2조, 제3조, 제8조는 2017년 6월 10일 상임이사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으며 2017년 6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 (규정 개정) [개정 2019.12.1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편집위원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용역사기록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 『무용역사기록학』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 및 간행일)**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는 수시로 하되, 호별 마감일은 1월 31일(3월호), 4월 30일(6월호), 7월 31일(9월호), 10월 31일(12월호)이다.

**제3조 (원고의 내용과 종류)** [개정 2019.12.12.]

1. 원고의 내용: 제출되는 원고는 무용학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원고여야 한다(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단행본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의 종류: 무용과 관련된 주제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국내외의 연구논문, 무용역사기록과 관련된 문헌을 심도 있게 분석한 서평,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 자료 및 연구 동향 보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투고 자격)** [개정 2019.12.12.]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회원은 무용전공 및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단, 초청기고는 예외로 한다). 한 호에 동일저자가 다수의 논문을 투고한 경우 단독 2편의 논문 게재는 불가하며, 단독 1편을 포함하여 총 2편까지만 가능하다.

**제5조 (원고의 제출)** [개정 2019.12.12.]

1. 제출 방법: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sddh.org>)을 통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접수일로 한다. 제출 후 답신을 받지 못하면, 편집국 이메일 혹은 편집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투고 사실과 접수를 확인한다(편집국 E-mail: ds\_dh2@daum.net / 편집간사 서현재 Tel.: 010-8383-6779).
2. 원고 제출: 제출된 원고는 제6조의 원고작성 지침 및 별도의 원고작성 요령을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자는 원고의 문법과 문장, 논문 체계와 형식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도록 한다.
3. 원고의 처리: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양식 및 분량: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sddh.org>)에서 학회지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연구논문의 원고는 표지로부터 영문초록까지 각 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학회지 편집본 면수로 25쪽의 분량을 지켜서 제출해야

한다. 서평 원고는 A4 용지로 5쪽 이내로 작성하며, 기록 자료 및 연구 동향 보고는 편집국과 별도로 상의한다.

5. 2인 이상 집필 논문의 저자 구분: 공동 저자인 경우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표시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논문 심사 후 수정까지 전담해야 한다.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을 저자로 명기한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로 올릴 수 없다.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는 제2저자 즉, 교신저자로 올릴 것을 권고한다.
6. 원고 중복 여부 표시: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거나 일부인 경우,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 후 게재할 때는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학술대회 발표문을 게재할 경우, 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주최기관을 명기하고, 논문 제목은 투고자의 재량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7. 심사료: 논문의 투고자는 9만원을 본 학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의뢰 결과 3인의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는 재심사료 3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재심사를 투고자가 포기하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8. 각종 동의서 확인 및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저작권 이양 동의, 연구윤리 서약에 동의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결과”(상세부분)를 첨부한 후 투고가 가능하다.

#### 제6조 (원고작성 지침) [개정 2019.12.12.]

1. 원고 형식: 한글 및 영문, 그 밖의 외래어 논문은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른다.
2. 논문의 순서와 구성: 별도의 『무용역사기록학』 원고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한자 및 외국어 사용 자제: 본문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나 외국어사용을 피한다. 필요한 경우는 한글 혹은 번역어를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2줄 이상의 원문은 각주를 통해 처리한다.

#### 제7조 (논문심사 과정 및 판정규정) [개정 2019.12.12.]

1. 편집국 소집 및 심사의 시작: 원고접수를 마감한 후 편집위원장은 2주 이내에 1차 편집국 회의를 소집한다. 편집국은 논문 1편당 3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사제 관계를 포함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평, 기록 자료, 그리고 연구 동향 보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국에서 결정한다.
2. 심사과정의 익명성 보장: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심사위원 및 편집국의 권리: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국은 학회지 간행 규정에 따라 원고의 형식과 체제, 그리고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의무: 위촉된 심사위원은 투명성, 공정성, 성실성에 근거하여 학회지에 합당한 연구논문을 관별하고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투고자를 동료 연구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서는 정중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이 불충실 하거나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의 종합판정: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2차 편집국 회의를 소집한다. 2차 편집국 회의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판정을 내린다. 종합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 게재가: 편집국의 검토 후 게재 가능함.
- 2) 수정후 게재가: 심사수정 사항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편집국은 이를 확인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심사수정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2주 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편집국은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3) 수정후 재심사: 심사 논문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것임. 판정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후에 재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국에서 판단함. 재심사에서도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음.

4) 게재불가: 당호에는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것임.

#### 6. 판정결과 통보 및 조치

- 1) 편집국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수정후 게재가’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수정사항의 이행확인을 위한 “수정사항 이행표”를 제출해야 한다.
- 3) 판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국에 발송해야 한다.

#### 제8조 (원고 게재료) [개정 2019.12.12.]

1. 기본 게재료: 게재료의 산정은 학회지 최종 인쇄본의 면수에 따라 책정된다. 연구 논문이 게재될 경우 투고자는 게재료 20만원을 본 학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한다.
2. 추가 원고 게재료: 최종 인쇄본을 기준으로 25면을 초과하는 경우는 1면당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하며, 최대 30면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3. 연구비 지원 논문: 연구비를 지원받고 이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논문은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4. 게재료 미지불: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5. 영문초록 감수비: 연구논문이 게재될 경우 영문초록 감수비 2만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 제9조 (투고자의 의무와 학회지 수령) [개정 2019.12.12.]

1. 최종 원고 일자 준수: 투고가 확정된 게재자는 최종 원고를 마감 기일 내에 제출한다. 수정 원고는 심사위원 및 편집국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수정후 게재가’ 및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사항 이행표”를 작성하여 최종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2. 원고작성요령 준수 및 필수 서류 제출: 투고자는 본 학회지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최종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각종 동의서에 확인을 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결과”(상세부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대상의 연구 논문을 투고할 경우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를 제출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3. 자료 보관의 의무: 연구윤리위반의 경우를 대비하여 논문작성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와 인용자료를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4. 학회지 수령: 논문 게재자에게는 해당 학회지 2권과 게재 논문의 별쇄본 10부를 기본 제공한다. 추가 학회지 구매를 원하는 경우 본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의 권리)** [개정 2019.12.12.]

『무용역사기록학』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한국무용학회 및 한국무용사학회 창간호부터 디지털저작물까지 포함)의 저작권은 무용역사기록학회가 갖는다. 게재된 논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재시행)**

이 규정은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의 통합 이전인 200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논문투고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무용역사기록학회로 통합한 이후인 2014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개정 2017.6.10.]

이 규정의 제7조는 2017년 6월 10일 상임이사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으며 2017년 6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규정 개정)** [개정 2019.12.1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편집위원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심사 규정

1.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국이 의뢰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국에서 결정한다.
2. 편집국으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 논문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국은 학회지 간행 규정에 따라 원고의 형식과 체제, 그리고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국이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를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4.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 A	심사 B	심사 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 게재가: 편집국의 검토 후 게재할 수 있다.
- 2) 수정후 게재가: 심사수정 사항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편집국은 이를 확인 후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수정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2주 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국이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수정후 재심사: 심사 논문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 판정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후에 재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국에서 판단한다. 재심사에서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4) 게재불가: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당호에는 논문 게재가 불가하다.
6.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가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규정 개정) [개정 2019.12.1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편집위원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연구윤리 규정

### 제 1 장 목적 및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무용역사기록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논문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과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절차 등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이중투고, 명예훼손 행위 등을 포함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을 임의로 가공 또는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저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출처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이나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이다.
  - 6) “이중투고”는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회지에서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다른 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7) “명예훼손”은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2 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 제3조 (연구윤리준수 확인) [개정 2019.12.12.]

1.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준수 확인란에 동의한 투고자만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 제4조 (저자 표시) [개정 2019.12.12.]

1. 저자는 다음 네 개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① 연구 아이디어나 설계,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 편집 수정본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2. 공동저자의 순서는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그 기여한 정도가 높은 순으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동저자의 순서와 표시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을 저자로 명기한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로 올릴 수 없다.
4.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논문 심사 후 수정까지 전담해야 한다. 편집국과의 일차적인 소통의 책임이 있으며 편집국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나 내용이 있을 때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논문의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5.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작성한다. 저자가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한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6. 연구나 출판에 공헌이 낮은 사람들은 기여자(Contributor) 혹은 사사표기(Acknowledge)로 처리하며, 기여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제5조 (중복게재 및 이중투고 금지)

1. 연구자는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 편집국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단행본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2.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거나 일부일 경우,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 후 수정 게재할 때는 논문의 앞부분에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 제6조 (표절 금지)

1. 『무용역사기록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실제 연구하여 얻은 결과만을 논문에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에 인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1. 기존에 발표된 문헌을 논문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선행 연구자의 글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할 때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과 보완) [개정 2019.12.12.]**

1. 연구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서 내용과 편집국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당 수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심사서 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국에 발송한다.

**제9조 (오류 통보)**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논문 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 게재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국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 [개정 2019.12.12.]**

인간 대상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를 편집국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인간 대상의 연구란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셋째, 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 제 3 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11조 (논문심사 의뢰 및 관리) [개정 2017.6.10.]**

1. 편집국은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이 불충실하거나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12조 (저자와 논문 내용의 비공개)**

1. 편집국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심사는 비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알 수 없고 투고자 역시 심사위원을 알 수 없게 진행한다.

## 제 4 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13조 (심사 기간, 책임자)

1. 심사위원은 반드시 학회가 규정한 심사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4조 (내용 적합성, 중복게재, 표절 확인)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내용이 『무용역사기록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이 본 학회지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었는지 혹은 표절과 같이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5조 (공정 심사, 비밀 보장, 인용 불가) [개정 2019.12.12.]

1.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 혹은 투고자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심사해서는 안 된다. 혹은 심사대상 논문을 읽지 않은 채 심사를 해서는 더욱 안 되며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서를 취합하여 심사결과의 편향성 및 불공정성 등을 검토 관리한다.
4. 편집위원장은 이해 상충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논문 검토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해 상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7.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고 출판되기 전에는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 제16조 (심사서 작성)

1. 심사서에 논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수정이나 보완의 경우에 대



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특히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문 연구자로서의 투고자의 독립성과 인격을 존중하여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심사결과 통보)**

1.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편집국에 통보한다.
2. 편집국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 (구성과 의무)**

1.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무용역사기록학회의 회원과 『무용역사기록학』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와 의결)**

1. 연구윤리위원장은 『무용역사기록학』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 심의요청이 있을 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이 연구윤리부정행위의 심의대상인 논문 저자라면 당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부정행위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권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

1. 대상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기회를 보장한다.

**제22조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소 내용
  - 2) 제소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심사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진술
  -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 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2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개정 2019.12.12.]**

1.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제2조의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해당 논문과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투고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들)에게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한다.
  - 2)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들)에게 게재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무용역사기록학』 및 무용역사기록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3) 무용역사기록학회 홈페이지 및 기타 디지털저작물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4)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를 상세히 통보한다.
  - 5) 연구윤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판정일로부터 5년간 『무용역사기록학』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6) 심각한 연구윤리부정행위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4조 (행정 및 기록) [개정 2019.12.12.]**

1.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조사 종료 후 조사 및 심의에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제 6 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및 개정**

**제25조 (시행)**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이전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규정은 본 규정(2009년 1월 1일 시행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 (개정)**

1. 연구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재시행)**

이 규정은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의 통합 이전인 200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논문투고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무용역사기록학회로 통합 한 이후인 2014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개정 2017.6.10.]**

이 규정의 제10조는 2017년 6월 10일 상임이사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으며 2017년 6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규정 개정) [개정 2019.12.1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편집위원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원고작성 요령

### 개요

- 본 학회지는 무용과 관련된 주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국내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를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 제출되는 원고는 본 학회지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자는 원고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연구논문은 표지로부터 영문초록까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학회지 편집본 면수로 25쪽의 분량을 지켜서 제출해야 한다. 서평 원고는 A4 용지로 5쪽 이내로 작성하며, 기록 자료 및 연구 동향 보고는 편집국과 별도로 상의한다. 논문 게재료의 산정은 학회지 최종 인쇄본의 면수에 준하여 책정된다.
- 본 학회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3월호), 4월 30일(6월호), 7월 31일(9월호), 10월 31일(12월호)로 한다.

#### 1. 논문의 순서 [개정 2019.12.12.]

논문은 표제,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소개의 순서로 배열 구성한다.

#### 2. 논문의 표제 [개정 2019.12.12.]

- 1) 표제 부분(원고 첫 페이지)에는 논문 제목과 목차,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을 기재한다.
- 2) 제목과 부제는 제목 바로 뒤에 콜론기호(:)를 넣고 부제를 한 줄 아래에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
- 3)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는 이름 아래에 괄호를 치고 명기한다.
- 4) 첫 번째 각주를 통해 연구자의 이메일을 명기한다. 교신저자와 공동저자의 경우 주저자 아래에 차례로 이름과 이메일을 명기한다.
- 5) 연구비 수혜 출처를 명기하거나 학위논문의 축약 혹은 학술대회 발표 후 수정 게재, 그리고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번호 등 부기할 글이 있을 때는 제목 바로 뒤에 “+”로 표시하고 각주에서 명기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았을 때는 연구지원 번호를 함께 명기한다. 학술대회 발표를 축약 게재할 때 학술대회명(년도), 일시, 장소, 주최기관은 쓰고, 발표 제목은 저자 재량에 따라 명기한다.

<표제의 예시>

무용역사기록의 현황과 전망:  
한국무용역사기록의 발달과정<sup>+,++</sup>

조무한\*  
(한국역사기록대학교 무용학과 조교수)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II. 본론  
    1.  
    2.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 조무한 muhan@dance.net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20ABC00000).  
++ 본 연구는 0000년 0월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마침(승인번호 2020 - 0000).

6) 공동저자의 구분

- (1)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순서로 표기한다.
- (2) 주저자는 성명 오른쪽 상단에 \*를, 공동저자는 \*\*, 그리고 교신저자는 \*\*\*으로 표시한다.
- 7) 목차에는 장 ‘I.’과 절 ‘1.’까지만 명기하며, 필요한 경우 항번호 ‘1)’까지 명기할 수 있다.

3. 논문의 초록 [개정 2019.12.12.]

- 1) 표제 다음 첫 장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국문초록을 넣는다. 영문 원고에는 영문 초록(Abstract)을 넣는다.
- 2) 영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넣는다. 영문 원고일 경우 국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영문초록의 논문 제목에서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머리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이름은 저자의 별도 표기가 없으면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를 따른다.
- 4) 연구자의 소속과 지위는 이름 아래 괄호를 치고 표기한다.
- 5) 국문초록은 1,000자 이내(원고지 5매 이내),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6) 논문이 추구하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4. 논문의 핵심어(Keywords)

국문 및 영문 초록 아래에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핵심 개념을 5개 내외로 제시하고, 이를 한글에서는 <주요어>로, 영문에서는 <Keywords>로 제시한다. ‘Keywords’에서 각 키워드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5. 영어의 표기 [개정 2019.12.12.]

- 1) 영문초록과 영어의 핵심어(Keywords)에서 한글을 원어로 하는 단어의 로마자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을 따른다.  
 <예> 조선: Joseon, 부산: Busan
- 2) 영어의 책명과 작품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3) 영어의 키워드에 외국어 고유명사가 들어갈 때 괄호 안에 원문과 번역을 제시한다.  
 <예> Jeongjae (문才, court dance)
- 4) 영어 논문과 영문초록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6. 본문의 작성

연구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연구방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 결론에서 얻어질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객관적인 이론과 선행연구에 준거하여 설명한다. 연구진행과정의 문제점과 제한점 등도 다룰 수 있다.

- 1) 조사와 실험 및 통계 관련 연구일 경우, 이론적 배경(혹은 관련 연구)은 간결하게 분석 요약하여 서론 부분에 포함시킨다.
- 2) 조사와 실험 및 통계 관련 연구일 경우, 결과는 결과(분석) 및 논의로, 결론은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쓸 수 있다.
- 3) 본문에서는 가급적 한자 혹은 외래어 표기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원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쓰거나 우리말 의미를 덧붙이도록 한다. 괄호와 앞의 단어 사이는 빈 칸을 두지 않고 붙여 쓴다. 인용 자료의 개념어(概念語), 인명(人名), 지명(地名), 책명(冊名) 등과 같은 고유명사의 한문이나 외래어는 괄호 안에 넣는다. 단 인명의 경우 출생년과 사망년을 함께 표시한다.  
 <예> 기보(記譜)는 ……  
 <예> 라바노테이션(Labanotation)은 ……  
 <예> 『악학궤범(樂學軌範)』과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예> 박연(朴堧, 1378-1458년)과 성현(成俔, 1439-1504년)에 의하면……
- 5) 앞에서 이미 언급된 용어가 반복될 때는 한글만 사용한다.  
 <예> 『악학궤범』과 『삼국사기』, 박연과 성현,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 6) 고유명사, 학술용어,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복합어는 붙여 쓴다.  
 <예> 한국기록대학교의 전통기록센터 및 마천대학교의 기념정보관……
- 7) 단위명사는 띄어 쓴다.  
 <예> 책 한 권, 버선 세 켤레

## 8) 저자표기

- (1) 논문의 본문 중에 이름을 표기할 경우 존칭을 일체 생략한다.
- (2) 외국 저자의 경우에 이름은 국문을 표기하고 원어 혹은 영문명을 괄호 안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만 표기할 수 있다.
- (3) 단체(기관)일 경우 처음 인용에는 단체(기관)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 (4)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인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는 성(family name)을 모두 표기한다.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를 쓰고 한 칸 띄운 뒤 “외”를, 외국인은 첫 저자의 성을 표기하고 쉼표를 찍고 “et al.”을 표기한다.  
 <예> 한종리 외, Alexandra, et al.
- (5) 둘 이상의 논문이 같은 성을 가진 저자일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인은 이름의 전부를 써주고, 외국인은 성과 그의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써준다.  
 <예> Alexandra J.
- (6) 같은 해에 동일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문헌은 출판 순서에 따라서 a, b, c 등으로 표시한다.
- (7) 저자가 6인 이상이면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한 칸 띄운 뒤 “외”로 쓰고, 외국인은 첫 저자의 성을 표기하고 “et al.”을 표기한다.

## 7. 무보, 그림, 표의 작성

- 1) 무보, 그림, 표는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하고, 도식과 화살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체묘기’를 하여 문서에 포함한다.
- 2) 무보, 그림, 표의 제목 및 내용을 작성한다. 제목 및 내용에 전문 용어를 원어로 직접 표기할 경우 우리말 의미를 덧붙인다.
- 3) 무보, 그림, 표 제목의 번호는 ‘표 1.’ 혹은 ‘그림 1.’ 또는 ‘무보 1.’과 같이 괄호 없이 표기하고, 본문에서 설명할 경우 <표 1> 혹은 <그림 1> 또는 <무보 1>로 표기한다.
- 4)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선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단, 라바노테이션과 같은 특정 무보나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 선도 사용할 수 있다.
- 5)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무보와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6) 무보와 그림 및 표가 인용된 자료일 경우 무보, 그림, 표의 하단에 캡션으로 제시한다.
- 7) 무보와 그림 및 표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원어로 표기한다.
- 8) 공인된 무보를 사용하는 논문은 저자의 책임으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무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8. 인용문

-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외국어 사용 논문의 인용문은 고유어를 사용할 수 있다.
- 2) 타인의 문장이나 견해를 인용할 때는 본문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문장의 끝에 각주를 달아 출전을 밝힌다.

- (1) 짧은 직접인용: 짧은 인용(2행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인용문이 ‘~고 말했다’처럼 계속성이 있는 말에 이어질 때에는 온점을 찍지 않는다.

〈예〉 조무한은 “무용기록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 (2) 긴 직접인용: 2행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변경한 후 왼쪽, 오른쪽을 각각 ‘들여쓰기’ 한다.
- (3) 간접인용: 다른 사람의 저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요약하거나 원문의 의도를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문장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로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에 따르면’, ‘~에 의하면’, 혹은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써서 간접 인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의 시작이나 끝나는 지점에 각주를 달아 출처를 명기한다.

〈예시〉

한국무용사 저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무용역사기록학회의 무용사위원회에서는 무용사학자의 역할과 책임을 기록자와 저술자로 제시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무용사학자 조무한은 ‘그 시대를 체험하지 않은 이상 무용사학자는 전달자와 스토리텔러에 불과하다’<sup>2)</sup>며 해석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1) 무용사위원회, **한국무용사연구**(서울: 출판사, 2014), 112-115쪽.

2) 조무한, “무용사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한국무용기록학** 15(7), 2005, 12-15쪽.

- (4) 재인용: 원전에서 바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수 자체가 불가능한 문헌이거나 외국어 문헌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을 재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전과 인용문헌을 모두 각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인용문헌의 쪽수를 명기한다.
- (5) 인용문의 오류: 직접 인용한 원문에 오류가 있다면 그대로 인용한 다음 바로 그 뒷부분에 [원문 그대로] 또는 [sic.]로 표시한다.
- (6) 웹사이트 인용: 웹사이트 콘텐츠의 인용은 본문이나 주에 ‘2014년 5월 15일의 무용역사기록학회 웹사이트에 의하면……’과 같이 쓸 수 있다. 웹사이트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주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날짜를 명기한다.
- 3)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비한자어권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 9. 부호 사용 및 숫자 표기

- 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 (1) 단행본, 학회지, 잡지: 『 』
  - (2) 논문: 「 」
  - (3) 작품 및 신문: 〈 〉
  - (4) 강조 및 간접 인용: ‘ ’(작은따옴표)
- 2)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만, 억, 조 등의 단위마다 단위어를 붙이고 천 단위 이하는 숫자로 적어 구분하기 쉽게 한다. 도표에서는 단위어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 시 자릿점(.)을 넣는다.  
 <예> 98억 7654만 3150[본문], 9,876,543,150[도표]
  - (2) 일정한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데쉬(-)로 연결하며 단위어는 뒤 숫자에 붙인다. 단위의 범위가 다른 경우는 앞뒤에 모두 표기해야 한다.  
 <예> 5, 6십년 → 50-60년; 24,5쪽 → 24-25쪽; 5천-1만회
  - (3) 속어나 관용어, 다른 숫자로 바뀌어 쓰이지 않는 용어의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예> 1회용 → 일회용; 단양8경 → 단양팔경; 50보100보 → 오십보백보

## 10. 주석 [개정 2019.12.12.]

- 1)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 2) 서지사항은 가능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각주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한글문서에서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따른다.
  - (2) 한글문헌은 쪽으로 표시하고, 영어문헌은 p.로 표시한다.  
 <예> 100쪽. ; 100-110쪽. / p.100. ; pp.100-110.
  - (3)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한 각주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특히 처음 언급되는 논문 저서 등은 출판정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 ① 학회지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권(호), 출판연도, 112-115쪽.
    - ②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제목”(학교명 00학위논문, 출판연도), 100쪽.
    - ③ 단행본: 저자명, **단행본 제목**(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75쪽.
    - ④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여러 편의 논문이나 단행본을 참고하여 나열할 때는 세미콜론(; )을 사용하여 배열한다. 한국인 먼저 가나다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 알파벳순으로 기술한다.  
 <예> 가저자명, **단행본 제목**(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75쪽; 나저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권(호), 출판연도, 112-115쪽.
  - (4) 반복 인용되는 각주 표기는 출판사항을 생략한다.
    - ① 학회지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권(호), 112-115쪽.

- ② 단행본: 저자명, 단행본 제목, 75쪽.
- ③ 가져자명, 단행본 제목, 75쪽; 가져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권(호), 112-115쪽; …….
- (5)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권수, 관련 쪽수(쪽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생략) 순으로 표기한다. 소장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시와 같이 한다.
- (6)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7)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한다.
- (8) 중략 또는 생략 표시는 …… 로 한다.

### 11. 저자 소개

저자 소개(biography)를 200자 이내로 작성한다.

〈예시〉

조무한은 한국대학교 미학과에서 “전통춤의 미학적 구조”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종합기록대학교 무용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사는 조선시대 민속춤의 역사이며, 주요 연구로는 “전라북도 교방청 춤기록에 관한 연구”, “조선 후기 민속춤 공연의 양태와 특성”, “조선 중기 민속 연희 공간의 특징과 의의” 등이 있다.

### 12. 참고문헌 [개정 2019.12.12.]

-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글문헌, 동양어 문헌(중국어, 일본어)을 저자의 가, 나, 다 순(한자음)으로 한다. 그다음에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번역서는 해당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3) 학회지 및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글은 잡지나 학회지 속의 쪽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 4) 논문과 단행본은 한글 및 중국어와 일본어의 제목은 “ ”로 표기하며, 기타 외국어표기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춤제목과 공연제목은 한글 및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에는 < >로 표시하며, 기타 외국어 표기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5)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 6) 동일 저자의 경우 출판연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동일저자의 저작물이 같은 연도에 두 편 이상 출판된 것이라면 출판연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 7)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된 연도를 사용한다. 발간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표기한다.

- 8) 단행본은 출판장소와 출판사가 명기되어야 하나 잡지는 출판장소와 출판사를 명기하지 않는다.
- 9)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경우 출판연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한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소속장소와 연도를 기재한다.
- 10) 외국어 저자는 단독 또는 첫 번째 저자의 성(family name)의 순서로 표기하며, 가급적 성과 이름(full name)으로 써준다.
- 11) 번역서는 원저자를 명기하고 가급적 원서명과 원서출판 연도를 제시한다.
- 12) 일간지, 팸플릿, 시청각자료(DVD, 방송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 통계자료, 보고서, 책록문 등 단행본 형태의 자료는 별도로 <자료>라고 표시하고 저술서 다음에 기재한다. 저술과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며, 한글, 중국어, 일어, 영어, 기타 외국어 순으로 기재한다.
- 13) 웹문서는 저자명(서양 문헌의 경우 성, 이름의 순), 출판연도(괄호 안에 제시), 웹자료의 제목, [검색일: 년년년월월.일일.], 웹사이트 주소(URL)의 순으로 명기한다. 저자가 없을 때는 제목을 저자 위치에 표기한다.
- 14)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에 두고, 그다음에 발간연도를 밝힌다. 단, 인용문헌에서 Anonymous라고 된 것은 이것을 저자로 간주한다.
- 15) 한글 문헌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 <통합예시>

### 1. 단행본

단행본	각주 Footno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필육, <b>한국무용학</b>(서울: 민속원, 2010), 10쪽.</li> <li>• Susan Peck MacDonald, <i>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p.333.</li> </ul>
	참고문헌 Bibliogra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필육, <b>한국무용학</b>, 서울: 민속원, 2010.</li> <li>• MacDonald, Susan Peck, <i>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li> </ul>
번역서	각주	Michale Jackson, <b>무용의 세계</b> ( <i>World of Dance</i> , 1999), 나감동 역(서울: 예술사, 2015), 99쪽.
	참고문헌	Jackson, Michale, <b>무용의 세계</b> ( <i>World of Dance</i> , 1999), 나감동 역, 서울: 예술사, 2015.
편·저서 내 장 (chapter)	각주	Blaise Cronin, “The Market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i>Marketing Concepts for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i> , ed. By Eileer de Saez, 2nd ed. (London: Facet Pub., 2002), p.4.
	참고문헌	Cronin, Blaise, “The Market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i>Marketing Concepts for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i> , ed. By Eileer de Saez, 2nd ed. London: Facet Pub., 2002.

2. 다수의 저자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혜연, 박영미, 신일영, <b>교육을 적용한 무용</b>(서울: 도서출판 금홍, 2003), 456쪽.</li> <li>• Geoffrey C. Ward and Ken Burns, <i>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 - 1945</i> (New York: Knopf, 2007), p.52.</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혜연, 박영미, 신일영, <b>교육을 적용한 무용</b>, 서울: 도서출판 금홍, 2003.</li> <li>• Ward, Geoffrey C., and Ken Burns, <i>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 - 1945</i>, New York: Knopf, 2007.</li> </ul>

3. 학회지, 학술발표

학회지 논문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희철, “움직임의 의미,” <b>한국무용기록학</b> 35(22), 2000, 23-24쪽.</li> <li>• Susan Peck MacDonald, “The Erasure of Language,” <i>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i> 58(4), 2007, pp.619-620.</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희철, “움직임의 의미,” <b>한국무용기록학</b> 35(22), 2000: 23-24.</li> <li>• MacDonald, Susan Peck, “The Erasure of Language,” <i>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i> 58(4), 2007: 619-640.</li> </ul>
학술대회 자료집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혜경, “독재정권기 극장건립에 나타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b>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몸의 정치학-순응과 저항의 춤</b>(무용역사기록학회 엮음, 2018), 169쪽.</li> <li>• Matthew Marr, “Stigma, Culture, and Social Ties in the Process of Exiting Homelessness, Tokyo and Los Angeles,” <i>Annual Meeting Conference Papers</i>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1), p.843.</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혜경, “독재정권기 극장건립에 나타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b>제20회 무용역사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몸의 정치학-순응과 저항의 춤</b>(무용역사기록학회 엮음, 2018): 169-202.</li> <li>• Marr, Matthew, “Stigma, Culture, and Social Ties in the Process of Exiting Homelessness, Tokyo and Los Angeles,” <i>Annual Meeting Conference Papers</i>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1): 840-855.</li> </ul>

4. 학위논문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희망, “춘앵전의 움직임의 연구사”(한국대학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15쪽.</li> <li>• Mihwa Choi, “Contesting Imaginaires in Death Ritual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PhD Diss. in Dance Major, University of Chicago, 2008), p.15.</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희소, “춘앵전 움직임의 연구사,” 한국대학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li> <li>• Choi, Mihwa, “Contesting Imaginaires in Death Ritual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PhD Diss. in Dance Major, University of Chicago, 2008.</li> </ul>

\*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과는 생략 가능하나, 교육·특수 정책·경영 등 그 외는 모두 명시한다.  
 <예> (한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20)

## 5. 신문, 잡지

저자 이름 없는 경우	각주	“무용계 위기,” <b>한국일보</b> (2019.01.01.), 8쪽.
	참고문헌	“무용계 위기,” <b>한국일보</b> (2019.01.01.).
저자 이름 있는 경우	각주	• 김갑순, “한국춤의 맥,” <b>한국일보</b> (1985.09.15.), 4쪽. • Daniel Mendelsohn, “But Enough about Me,” <i>New Yorker</i> , 2010.01.25., p.68.
	참고문헌	• 김갑순, “한국춤의 맥,” <b>한국일보</b> (1985.09.15.). • Mendelsohn, Daniel, “But Enough about Me,” <i>New Yorker</i> , 2010.01.25.
잡지	각주	Jeff Wise, “Tough Track: How and Why an Average Guy became an Ultramarathoner,” <i>Psychology Today</i> , April 2011, pp.65-69.
	참고문헌	Wise, Jeff. “Tough Track: How and Why an Average Guy became an Ultramarathoner” <i>Psychology Today</i> , April 2011: 65-69.

\* 온라인 자료의 경우 끝에 [검색일: 년년년년.월월.일일.], URL. 혹은 [Access: YYYY.MM.DD.], URL.을 추가한다.

## 6. 정부문서, 협회, 기관 등 인명이 나타나지 않은 단체가 편찬한 책

정부문서	각주	•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b>입법자료분석</b> 1(4), 서울: 국회도서관, 1989, 4쪽. • Great Britain, Parliament, <i>Northern Ireland Act 1982</i> , London: HMSO, 1982, p.xi.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b>입법자료분석</b> 1(4), 서울: 국회도서관, 1989. • Great Britain, Parliament, <i>Northern Ireland Act 1982</i> , London: HMSO, 1982.
기관	각주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i>Annual Report, 1982</i> , New York: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1983, p.50.
	참고문헌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i>Annual Report, 1982</i> , New York: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1983.

\* 문서작성자가 명시된 경우, 그 이름을 맨 앞에 명시한다.

\* 온라인 버전의 경우 끝에 [검색일: 년년년년.월월.일일.], URL. 혹은 [Access: YYYY.MM.DD.], URL.을 추가한다.

## 7. 면담자료, 구술자료

저자 자신이 수행한 인터뷰	각주	•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과의 면담, 서울자료원, 1990.05.15. • Toni Morrison, telephone interview, 2006.12.13.
	참고문헌	•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과의 면담, 서울자료원, 1990.05.15. • Morrison, Toni, telephone interview, 2006.12.13.
이름 없는 구술자료	각주	<b>92 무용의 해 구술자료집 1권</b> (서울: 국립무용원, 2020), 55쪽.
	참고문헌	<b>92 무용의 해 구술자료집 1-3권</b> , 서울: 국립무용원, 2020.
이름 있는 구술자료	각주	정도만 구술, 강사지 면담, 정도만 연구실, 2018.08.10., 1차 인터뷰 중에서.
	참고문헌	정도만 구술, 강사지 면담, 정도만 연구실, 2018.08.10., 1차 인터뷰; 정도만 연구실, 2018.09.09., 2차 인터뷰.

온라인 공개 구술자료	각주	문사고 구술, 김도술 면담, “90년대 한국무용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구술사 홈페이지, 구술자료번호 OH_01_15_정도만_01.pdf. [검색일: 2020.02.02.], URL, 75쪽.
	참고문헌	문사고 구술, 김도술 면담, “90년대 한국무용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구술사 홈페이지, 구술자료번호 OH_01_15_정도만_01.pdf. [검색일: 2020.02.02.], URL.

## 8. 사전

항목 저자가 따로 없는 경우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홍식 편, <b>국사대사전</b>(서울: 백만사, 1973), “임오군란.”</li> <li>• Tim Austin, comp., <i>The Times Style and Usage Guide</i>, (London: Times Books, 2003), s.vv. “police ranks,” “postal addresses.”</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홍식 편, <b>국사대사전</b>, 서울: 백만사, 1973.</li> <li>• Austin, Tim, comp., <i>The Times Style and Usage Guide</i>, London: Times Books, 2003.</li> </ul>
항목 저자가 있는 경우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원오, “삼죽오,” <b>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b>, 국립민속박물관, 2000.</li> <li>• Melissa Isaacson, s.v. “Bulls,” in <i>Encyclopedia of Chicago</i>, eds. Janice L. Reiff, Ann Durking Keating, and James R. Grossman, Chicago Historical Society, 2005.</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원오, “삼죽오,” <b>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b>, 국립민속박물관, 2000.</li> <li>• Isaacson, Melissa, s.v. “Bulls,” in <i>Encyclopedia of Chicago</i>, eds. Janice L. Reiff, Ann Durking Keating, and James R. Grossman, Chicago Historical Society, 2005.</li> </ul>

\* s.v.= sub verbo. “under the word”. 복수 s.vv.

\* 온라인 버전은 [검색일: 년년년년.월월.일일.], URL. 혹은 [Access: YYYY.MM.DD.], URL.을 추가한다.

## 9. 팸플릿, 브로슈어, 보고서 등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갑순, <b>김갑순의 춤공연</b>, 서울: 문예회관대극장, 2014.07.23.</li> <li>•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Access</i>,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7. <a href="https://metmuseum.org/-/media/Files/Events/Programs/Progs%20for%20Visitors%20with%20Disabilities/AccessCalendar.pdf">https://metmuseum.org/-/media/Files/Events/Programs/Progs%20for%20Visitors%20with%20Disabilities/AccessCalendar.pdf</a>.</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갑순, <b>김갑순의 춤공연</b>, 서울: 문예회관대극장, 2014.07.23.</li> <li>•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Access</i>,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7. <a href="https://metmuseum.org/-/media/Files/Events/Programs/Progs%20for%20Visitors%20with%20Disabilities/AccessCalendar.pdf">https://metmuseum.org/-/media/Files/Events/Programs/Progs%20for%20Visitors%20with%20Disabilities/AccessCalendar.pdf</a>.</li> </ul>

## 10. 법률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제1절 제5조.
판결문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6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5.20. 선고 2016가합504211 판결.

\* 각주, 참고문헌 동일

## 11. 온라인 홈페이지 (Online Homepage)

각주	8.15해방무용연구소 홈페이지, [검색일: 2020.01.05.], URL.
참고문헌	8.15해방무용연구소 홈페이지, [검색일: 2020.01.05.], URL.

## 12. SNS, 온라인 영상자료

SNS	American University Library, "One week left to apply for your chance to win \$1,000!" Facebook, [Access: 2020.03.11.], <a href="https://www.facebook.com/AULibrary/posts/10153431856787157">https://www.facebook.com/AULibrary/posts/10153431856787157</a> .
온라인 영상자료	Mnet K-POP, "Mnet <댄싱9 시즌2> Ep04 : 최수진&손병현 / I Have Nothing - Whitney Houston," [검색일: 2020.07.04.], YouTube video, 8:37 min. <a href="https://www.ted.com/talks/lara_setrakian_3_ways_to_fix_a_broken_news_industry#t-521404">https://www.ted.com/talks/lara_setrakian_3_ways_to_fix_a_broken_news_industry#t-521404</a> .

\* 각주, 참고문헌 동일

## 13. 반복 인용

바로 앞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글, 75쪽.</li> <li>• Ibid., p.75.</li> </ul>
바로 앞은 아니지만, 앞에서 인용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필육, <b>한국무용학</b>, 75쪽.</li> <li>• 이회철, "움직임의 의미," <b>한국무용기록학</b> 35(22), 23-24쪽.</li> <li>• Ward and Burns, <i>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 - 1945</i>, p.52. (외국저자인 경우 성만 기재)</li> </ul>

\* Ibidem, "In the same place"

## 14. 재인용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용덕, "일제초기의 교육정책," <b>문경</b>(26)(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1969): 18-20쪽, 정재철, <b>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b>(서울: 일지사, 1985), 17쪽에서 재인용.</li> <li>• Ian Hacking, <i>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103, quoted in Manuel DeLanda, <i>A New Philosophy of Society</i> (New York: Continuum, 2006), p.2.</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재철, <b>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b>, 서울: 일지사, 1985.</li> <li>• DeLanda, Manuel, <i>A New Philosophy of Society</i>, New York: Continuum, 2006.</li> </ul>

\* 재인용은 권장하지 않음. 단, 원문을 전혀 구할 수 없을 때 사용 허용.

## 15. 영상자료

TV 자료	김윤한(프로듀서), “명작 다큐: 그림으로 읽는 우리 춤의 역사,” 서울: KBS(2015.10.30.).
DVD 자료	Harry, Paul (Producer) & Potter, Henry (Director). <i>Korean Court Dances</i> [DVD]. London: Media Collection (2 Hours, Color), 2015.

\* 각주, 참고문헌 동일

## 16. 그림, 사진, 무보

미술작품	그림캡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섭, “흰 소,” 1954, 종이에 유채, 30 x 41.7cm, 홍익대학교박물관.</li> <li>• Edgar Degas, <i>Ballet Rehearsal on Stage</i>, 1874, Oil on canvas, 65 × 81cm, Musée d'Orsay, Paris.</li> </ul>
문헌에서 인용하는 이미지	그림캡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앤드류 에클스, “〈입장 전 소지품 검사〉에 등장하는 클럽 댄서 아치 버넷,” <b>미디어 시대의 춤: 현장에서 들려주는 이야기</b>(<i>Envisioning Dance on Film and Video</i>, 2002), eds. Judy Mitoma, Elizabeth Zimmer, Dale Ann Stieber, 김수인, 김현정, 정옥희, 한석진 역(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69쪽.</li> <li>• Alevei Savrasov, <i>The Rooks Have Arrived</i>, 1871, in Dmitri V. Sarabianov, <i>Russian Art: From Neoclassicism to the Avant-Garde 1800-1917: Painting - Sculpture - Architecture</i>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0), p.169, plate 31.</li> </ul>
저자 직접촬영	그림캡션	강미라(연구자), 중국 해란강, 2019.07.12.
무보 (舞譜)	무보캡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버노테이션 무보, 유시현 기보, “무무,” <b>궁중무용무보 제13집: 아악 일무보</b>, 국립국악원, 2009.</li> <li>• Labanotation of <i>Donald Bark's Fire Study</i>, 1988, The Korea Dance Notation Archive.</li> </ul>

## 17. 고전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권수, 관련 쪽수(쪽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생략) 순으로 표기한다. 소장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시와 같이한다. 단, 현대 번역본을 참조한 경우는 단행본 표기에 준한다.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약용, <b>여유당전서</b> 1 권17, 爲李仁榮贈言, 372쪽.</li> <li>• <b>世宗實錄</b> 권47, 15b3-6, 12년 2월 19일(경인)(<b>조선왕조실록</b> 권3, 219쪽). ※ 15b3-6은 원전의 고유 면과 세로 행 수를 표시한 것이다. a는 전면, b는 후면을 표시한다. 즉 15쪽 후면의 3행에서 6행까지의 원문을 인용했음을 나타낸다.</li> <li>• <b>풍정도감의궤</b>(소장처, 도서번호).</li> </ul>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약용, <b>여유당전서</b> 1 권17, 爲李仁榮贈言.</li> <li>• <b>世宗實錄</b> 권47, 15b3-6, 12년 2월 19일(경인)(<b>조선왕조실록</b> 권3).</li> <li>• <b>풍정도감의궤</b>(소장처, 도서번호).</li> </ul>

18. 강연, 세미나, 라이브 공연 등 기록물(인쇄본, 영상) 자료가 없는 행사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강연자, 행사명, 날짜를 각주에 명시하고 참고문헌에는 명시하지 않는다.